

#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 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학교” 라 함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2. “학생” 이라 함은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교직원” 이라 함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1항단서의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공무원인 교원 및 직원은 이 약관에 의한 교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교육활동” 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5. “공제” 라 함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를 말합니다.

**제3조(공제가입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함)에 공제 청약을 하고 중앙회의 승낙을 받은 학교장은 공제가입자가 됩니다.

**제4조(피공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은 당해 학교가 공제에 가입한 때에 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

1. 학생 : 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함)한 때 또는 입학이 허가되거나 입학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한 때
2. 교직원 : 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공제에서 탈퇴하는 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은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3.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 ③ 학교장이 교육계획에 의해 해당 학교에 입학이 허가되거나 입학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활동을 한 경우는 입학예정 학교의 피공제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예비소집
  2. 신입생추첨
  3. 입학등록
  4. 배정신고 및 접수
  5. 체육특기자 강화훈련
  6. 신입생 적응교육(OT)
  7. 그밖에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활동

**제5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공제가입자의 청약과 중앙회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공제가입자의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중앙회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가입자가 공제에 최초에 가입하는 때에는 공제가입자는 중앙회가 정하는 가입비를 내야 합니다.

**제6조(공제기간)** 공제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합니다.

**제7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중앙회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8조(공제료)** 공제료는 당해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4월 1일 현재 학생수와 교직원수에 1인당 공제료를 곱한 금액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야 합니다.

**제9조(보상하는 손해)**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피해로 인한 손해
2.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 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나. 일사병
  -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10조(사고발생 통지)** ① 공제가입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늘어난 때에는 중앙회는 그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사고통지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제11조(공제급여)** 중앙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례비

**제12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공제자가 제9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사고발생국, 재외 한국학교 소재 국가 또는 대한민국(제3국 제외)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며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② 치료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소요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제9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재활치료

마. 입원

바. 간호

사. 호송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 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③ 요양급여는 2천만원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3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장해급여는 학생은 2억원, 교직원은 2억5천만원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4조(간병급여)** ① 제12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간병급여는 학생은 2억원, 교직원은 2억5천만원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5조(유족급여 및 장례비)** ① 피공제자가 제9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2. 부양사실이 인정되는 호적상 가를 달리하였던 자녀
- ② 장례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100만원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완전생명표에 의하고 평균임금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를 정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평균여명·평균임금의 적용시점은 당해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유족급여는 학생은 2억원, 교직원은 2억5천만원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⑤ 제13조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제16조(위로금)** 중앙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보상한도 산정의 특례)** ① 사고 피해자가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인 교직원인 경우 다음 최저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사고 당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장의 협조를 얻어 해당국가의 물가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 보상한도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에 의하여 보상한도가 낮게 산출되는 경우는 이와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양급여	장해·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보상한도	2,000US\$	15,000US\$	15,000US\$	500US\$

② 전항에 따른 국가별 구체적인 지급한도 금액은 교육부장관과 중앙회 이사장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18조(기왕증)** 중앙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제9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제19조(과실상계)** ① 제13조(장해급여), 제14조(간병급여), 제15조(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공제급여에 대하여 피공제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 중 학생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

의 50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

2. 피공제자가 초등학교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1사고당 보상한도액)** 제12조(요양급여) 내지 제19조(과실상계)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에 대한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합니다.

**제21조(공제급여의 지급 결정)** ①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중앙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개월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일만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중앙회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공제급여의 지급)** ① 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 중 미납입부분이 있으면 지급할 공제급여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

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공제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통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2.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또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
3. 피공제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4.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5. 농기계,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자동차·선박·항공기 사고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및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사고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9. 학교장이 학교 이외의 기관, 시설 등에 교육을 위탁하여 해당 기관, 시설 장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되는 활동 중 사고
10.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은 사고
11. 국가 간의 이동을 위해 소요된 항공료 및 선박운임, 통역비 등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

**제24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약관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은 경우 중앙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약관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중앙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합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6조(계약의 해지)** 공제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제기간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당해 연도의 공제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공제가입자는 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③ 심사청구서의 양식은 별지3과 같습니다.

**제29조(시효)** ①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0조(서류의 송달)**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1조(진찰요구)**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

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또는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33조(약관의 해석)** ① 중앙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공제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중앙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지1]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 사고발생통지서**

■ 학교 현황

학교	학교 (전화 : _____ , FAX : _____)				
	주소 :				
작성자	성명		직위		연락처
확인자	교감		학교장		

■ 사고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사고자 구분	( ) 학생 ( - ), ( ) 교직원

■ 사고관련자(없을 경우 생략가능)

이름	성별	학년/반	관련 내용

■ 사고 현황

사고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정도			사고부위
사고원인			사고형태

■ 사고 개요(육하원칙으로 작성)

■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 기타사항

※ 1. 본 사고통지서는 내부결재를 한 다음 원본은 보관(향후 공제급여청구 시 결재본의 사본 제출)하고, 전자파일은 반드시 본회 홈페이지(www.ssif.or.kr)에 로그인하여 중앙회공제사업>사고발생통지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현황과 사고개요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붙임 참조

20    년    월    일

학교장

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 < 작성요령 >

① 사고시간 : 교육활동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재 예) 정규수업 중, 체육시간 중, 청소시간 중, 휴식시간 중 등

② 사고장소 : 구체적인 사고발생 장소

③ 사고정도 : 상, 중, 하 중 택일

④ 사고부위 : 다음 항목 중 택일

머리, 눈, 코, 귀, 입, 치아, 안면, 목, 팔, 팔목, 손·손가락, 가슴·등, 복부,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발가락, 비노·생식기, 신경계통, 무릎, 손목, 어깨, 팔꿈치, 발뒤꿈치, 고관절, 기타

⑤ 사고원인 : 다음 분류에 따라 하위항목 중 어느 하나를 택일

- 자기 관련 사고 : 학생부주의, 교칙위반, 교사(사감)의 지도감독을 위반
- 타인 관련 사고 : 교사(사감)의 과실 또는 지도감독 소홀, 교사(사감)의 체벌에 의한 사고, 고의성 없는 상대방
- 상호 관련 사고 : 운동·경기, 놀이·장난, 원인불명 사고, 시설물하자 사고, 기타

⑥ 사고형태 : 다음 분류에 따라 하위항목 중 어느 하나를 택일

- 상해사고 : 충돌/부딪힘, 미끄러짐/쏟림, 걸려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찢림, 추락, 폭발·화상, 감전, 익수, 자연재해
- 질병사고 : 식중독,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이물질 접촉, 전염병, 기타
- 사망사고
- 기타

⑦ 사고개요(작성례)

2000년 00월 00일 0요일 00시 00분경 사고학생인 000이(가) 체육시간에 100미터 달리기를 하다가 함께 뛰던 학생의 발에 걸려 넘어진 사고

사고 당시 △△△학생은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학생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음

사고 후 담임교사가 000학생을 보건실로 데리고 가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발목이 툭툭 붓고 통증을 호소하여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 후 CT촬영 등 여러가지 검사를 받음.

다음날 정밀 검사결과 발목 연골이 상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결과가 나와 수술을 받고 현재 00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임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요양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li> <li>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li> <li>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li> <li>4. 은행 통장 사본(학교장 명의)</li> </ol>	
장해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li> <li>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li> <li>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li> <li>4. 소득금액증명</li> <li>5. 은행 통장 사본(학교장 명의)</li> </ol>	
간병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li> <li>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li> <li>3. 은행 통장 사본(학교장 명의)</li> </ol>	
유족급여 및 장의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li> <li>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li> <li>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li> <li>4. 가족관계증명서</li> <li>5. 소득금액증명</li> <li>6. 은행 통장 사본(학교장 명의)</li> </ol>	
위로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li> <li>2. 신분증</li> <li>3. 가족관계증명서</li> <li>4.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li> </ol>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1. ① ~ ④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⑤ ~ ⑧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1항”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청구인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변호사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3. ⑨ ~ ⑬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속학교명,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4. ⑭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중앙회에서 공제급여 지급 등이 결정된 날을 기재합니다.
5. ⑮ 공제급여 결정내용은 중앙회에서 지급 결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⑯ “중앙회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은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이라고 기재하고, 이러한 고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지 않았음”으로 기재합니다.
7. ⑰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는 다음 『예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첨부합니다.

☞ 청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20 . . . 자로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중 택일) ○○○원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 청구취지

○○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이 유

청구인은 20 . . .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급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급여 ○○○원 지급결정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요양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유와 사실관계,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

20 . . . 청구인 ○○○